

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
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 청 북 도 의 회
산 업 경 제 위 원 회

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윤남진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0년 10월 5일

○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6일

3. 제안이유

- 「과학기술기본법(시행령)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내용으로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시행령)」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기술창업활성화 전담기관 지정의 근거(안 제1조)

-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6조의4제3항으로부터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4조의7 제2항으로 개정함.

나.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행정지원의 근거(안 제2조제2항)

- 「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」 제24조의4제4항으로부터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5조의7제3항으로 개정함.

다.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출연금 등 지원의 근거(안 제3조제1항)

-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6조의4제4항으로부터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4조의7제4항으로 개정함.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우경수)

가. 제출배경

- 「정부조직법」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서 창업진흥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기업벤처기업부로 이관
- 「과학기술기본법(시행령)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한 사항을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시행령)」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조례 개정 필요

※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[2019.8.20. 일부개정, 시행 2020.2.21]

나. 주요 개정내용

- 안 제1조 중 ‘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6조의4제3항’을 ‘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4조의7제2항’으로 변경
- 안 제2조제2항 중 ‘「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」 제24조4제4항’을 ‘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6조의7제3항’으로 변경
- 안 제3조제1항 중 ‘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6조4제4항’을 ‘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4조의7제4항’으로 변경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「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